WORLD TRADE ORGANIZATION

G/TBT/N/CAN/785

2026-11-04

(26-7827)

페이지: 1/3

무역기술장벽위원회

Original: English, French

통보

제 10.6 조에 따라 다음 통보문을 회람한다.

1.	**통보국가:** 캐나다 **해당되는 경우, 관련 지방정부의 명칭(제 3.2 조 및 제 7.2 조):**
2.	**담당기관:** 캐나다 환경기후변화부(ECCC)
3.	**근거 조항 제 2.9.2 조 [X], 제 2.10.1 조 [ ], 제 5.6.2 조 [X], 제 5.7.1 조 [ ], 제 3.2 조 [ ], 제 7.2 조 [ ], 기타:**
4.	**해당 제품(HS 코드 또는 국가 관세 분류 번호. 해당되는 경우 ICS 번호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음):** 연료 HS: 271012 및 271019; ICS: 03.120, 13.020, 75.160
5.	**통보 문서의 세부 사항(제목, 페이지 수, 접근 방법):** 청정연료규정을 개정하는 규정 (43 페이지, 영어 및 프랑스어) **요청 시 사본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당국의 통보 문서 및/또는 연락처 링크:** https://gazette.gc.ca/rp-pr/p1/2026/2026-10-31/html/reg1-eng.html
6.	**내용:** *청정연료규정*(이하 "규정")은 규제 대상자(휘발유 또는 경유의 생산자 및 수입업자)가 캐나다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휘발유 또는 경유의 전과정 탄소집약도를 감축하도록 요구한다. 이를 위하여 규정은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하여 단위 에너지당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환산량(그램)(그램/메가줄, 즉 gCO2e/MJ 로 표시)으로 연간 전과정 탄소집약도 한도를 정한다. 연간 전과정 탄소집약도 한도는 2023 년 7 월 1 일에 시행되었으며 2030 년까지 점진적으로 낮아진다. 규정은 주요 준수 수단으로 크레딧 시장을 구축한다. 각 크레딧은 CO2e 1 톤의 전과정 배출 감축량에 해당한다. 규제 대상자는 각 준수 기간마다 충분한 크레딧을 생성하거나 취득하고 이를 사용하여 연간 감축 요건의 준수를 입증해야 한다. 크레딧은 다음 범주의 활동에 대하여 생성된다: • 범주 1: 연료 전과정에 걸친 배출 감축 프로젝트(예: 탄소 포집 및 영구 저장, 저탄소집약도 전력, 정유소에서의 혼합 처리) • 범주 2: 캐나다에서 사용하기 위한 저탄소 연료의 공급(예: 에탄올, 바이오디젤, 수소화 처리 재생 디젤, 재생 천연가스 또는 재생 프로판)

	• 범주 3: 첨단 차량 기술에 대한 연료 및 에너지 공급(예: 전기 및 수소) *청정연료규정을 개정하는 규정안*(이하 "개정안")은 북미에서 수확, 생산, 추출 또는 수집되고 가공된 원료로부터 얻어 캐나다에서 생산된 액체 저탄소 연료에 대하여 크레딧 승수를 도입할 것이다. 또한 캐나다에서 생산되어 차량의 연료 또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기체 저탄소 연료에 대해서도 승수가 제안되고 있다. 이러한 승수는 북미산 원료로 만든 캐나다산 저탄소 연료에 추가적인 크레딧 가치를 부여하며, 1.3~1.8 범위이다. 실질적으로 이는 적격 캐나다산 연료가 더 많은 준수 크레딧을 생성하게 됨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캐나다 생산자가 외국의 인센티브를 지원받는 연료와 보다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하도록 돕고 국내 생산에 대한 투자를 장려한다. 또한 개정안은 기체 준수 크레딧 사용에 대한 10% 한도의 절반을 재생 천연가스 등 기체 저탄소 연료의 캐나다 내 생산분으로 할당할 것이다. 이는 캐나다 시장의 일부가 캐나다산 기체 저탄소 연료에 계속 열려 있도록 보장하여 국내 생산과 투자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개정안은 또한 규제 대상자의 준수 유연성을 확대하고 크레딧 시장의 장기적인 안정성과 회복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개정안은 등록된 배출 감축 자금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기여로 생성된 준수 크레딧의 사용 한도를 10%에서 15%로 상향할 것이다. 이는 규제 대상자에게 준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며, 배출 감축을 계속 달성하면서 준수 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밖의 경미한 행정적 수정도 제안된다.
7.	**목적 및 근거(해당되는 경우 긴급한 문제의 성격 포함):** 개정안의 목적은 온실가스(GHG) 배출 감축 및 캐나다의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지원이라는 규정의 주된 목적을 유지하면서 캐나다 저탄소 연료 부문을 지원하는 것이다. 강력하고 건전한 국내 저탄소 연료 부문은 캐나다의 장기적인 탈탄소화 목표에 중요한 기여를 하며, 규정의 핵심 준수 경로를 제공하여 현재와 미래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지원한다. 개정안은 또한 규제 대상자의 준수 유연성을 확대하고 크레딧 시장의 장기적인 안정성과 회복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끝으로 개정안은 크레딧 시장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보다 투명한 크레딧 가격 책정을 지원하며, 규제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8.	**관련 문서:** 캐나다 환경기후변화부 웹사이트: https://www.canada.ca/en/environment-climate-change/news/2026/10/canada-proposes-changes-to-support-the-low-carbon-fuel-industry.html, 2026-10-27 게시, (영어 및 프랑스어로 제공됨)
9.	**채택 예정일:** 추후 결정 **시행 예정일:** 최종 개정안이 등록된 날
10.	**의견 제공** **의견 마감일:** 2027-01-14 **통보일로부터 60 일 [ ]** **해당 통보와 관련한 의견을 처리하도록 지정된 기관 또는 당국의 연락처:** 캐나다 통보처 및 질의처

캐나다 외교부
기술장벽규정과
111 Sussex Drive
Ottawa, ON K1A 0G2, Canada
이메일: enquirypoint@international.gc.ca